- 1 〈코로나 19〉 확산 방지를 위한 〈홋카이도〉의 긴급사태조치
- 1 구 역 홋카이도 전역
- 2 기 간 2020년 4월 17일(금) 부터 2020년 5월 6일(수) 까지
- 3 실시내용

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45조 〈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요청〉 및 동법 제24조 〈도도부현(지방자치단체) 대책 본부장의 권한〉에 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

- 철저한 감염방지
 - **도민들에게** 다시 한번 <**손씻기에 힘쓰기>와 <기침 에티켓 지키기>를 강하게 요청**
- 외출 자제 요청 등 *【2020년4월17일(금)~5월6일(수)】*
 - 도민들에게、의료기관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밖에서 운동 혹은 산책과 같은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, 식료품 및 의약품, 생활필수품 등의 구입, 직장으로의 출퇴근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할 것을 요청。또한, 삿포로시와 타 지역간의 불필요한 왕래를 자제 할 것을 요청(특조법 제45조 제 1 항)

이와 함께、직장으로 출퇴근 할 때는 <<u>시차 출근>이나 <3가지 밀(密)(밀폐·밀접·밀접) 방지>를 유지하고、</u>이에 더해<<u>재택근무>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</u>을 촉구(특조법 제24조 제9항)

- o 특히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의 접객 음식점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(특조법 제45조 제 1 항)
- 전국적 감염방지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여행 등 <u>타지역으로의 이동 자제</u>를 요청함과 동시에 <u>황금연휴 기간 중</u>에는 <u>특히 왕래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</u>(특조법 제24조 제9항)
- 시설 사용 정지 행사(이벤트) 개최정지(자제) 요청(협조의뢰)
- <u>시설된자 또는 행상(이벤트) 주최자에 대해 시설 사용정지 혹은 행사 (이벤트) 개최정지</u>를 요청(협조의뢰) (일부: 특조법제24조제9항) <u>(2020년4월20일(월)∼5월6일(수))</u>
- o 상기 이외에<u>「**3가지 밀(密)(밀폐·밀집·밀접) 회피」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집회 행사 개최는 자제** 요청</u>(특조법 제24조제9항) *【2020년4월17일(금)~5월6일(수)】*
- 〈홋카이도 사회적 거리두기〉 추진 [2020년4월17일(금)~5월6일(수)]
- <u>도민 및 사업자에게</u>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<u>사실천해 나갈 것을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 (서로</u> 손을 뻗어서 닿지 않는 거리) 를 확보하는 【사회적 거리 두기】를 매일 실천해 나갈 것을 요청